



제420회국회(정기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장 재고폐기물 정의 신설 등〉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49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장 재고폐기물 정의 신설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7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사업장 재고폐기물 정의 신설 등

개정안은 재고 의류와 같이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3호의2),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사업장 재고폐기물”이란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제품을 말한다. 4.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생략)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u>사업장폐기물의</u>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⑩ (생략)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업장폐기물 및 사업장 재고폐기물의</u> ----- ----- ----- -----. ----- -----. ③ ~ ⑩ (현행과 같음)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의류 폐기물은 연간 10만 8,434톤으로, 2020년 8만 6,050톤에 비하여 2만 2,384톤(26%)이 증가하는 등, 3년 평균 의류 폐기물 발생량이 약 10만톤에 이르는 상황임.

[폐섬유류 내 폐의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톤/년)

연도	구분	발생량	처리			
			재 활용	소각	매립	기타
2020	소계	86,050.7	84,513.6	1,376.6	-	160.5
	생활폐기물	82,422.7	82,422.7	-	-	-
	사업장폐기물	3,628.0	2,090.9	1,376.6	-	160.5
2021	소계	120,481.6	119,382.3	1,071.4	-	27.9
	생활폐기물	118,386.3	118,386.3	-	-	-
	사업장폐기물	2,095.3	996.0	1,071.4	-	27.9
2022	소계	108,434.2	107,237.7	908.2	-	288.2
	생활폐기물	106,536.3	106,536.3	-	-	-
	사업장폐기물	1,897.9	701.4	908.2	-	288.2

자료 : 환경부

의류 폐기물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브랜드 희소성을 지키기 위하여 일부 패션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모두 소진시키기보다는 폐기하려는 유인, 재고 소각 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하려는 유인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고 의류를 소각해서 폐기하고 있다고 함.¹⁾

1) 경향신문, ‘그날 ‘007 작전’ 속에 새 옷들이 소각됐다’에 따르면, 패션기업은 보관비 절약, 손실 처리를 통한 세금 보전 등을 위하여 재고 의류를 소각하고 있음.

한편 앞선 통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섬유류 세부 분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의류²⁾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³⁾로 의류를 배출하여 재고 처리 사실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의류 재고의 소각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상 정의 규정에 ‘사업장 재고폐기물’을 별도로 추가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폐의류 관리 등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상 정의 규정은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외에 ‘사업장 재고폐기물’을 신설할 경우 재고 의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료 업계 뿐만 아니라 여타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정의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의류(51-27-03)

3) 폐천연섬유(52-27-01), 폐합성섬유(51-27-02), 그 밖의 폐섬유(51-27-00) 등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보관 중인 재고제품이 폐기를 위해 배출되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종류와 배출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신설은 실익이 없으며,

‘사업장 재고 폐기물’ 신설을 통해 기존 사업장 폐기물과 다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제약 등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체계 하에서 관련 업계 소통·교육 등을 통해 재고 의류 폐기 시 폐기물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